



보건복지부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

1. 관련

가. 보험급여과-1106호('20.3.5.)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3058호('20.3.24.), 보험급여과-4211호('23.8.30.), 보험급여과-6265호('23.12.22.)

나. 「코로나19 입원?격리 치료비 지원업무(제10판) 개정안내」 - 중앙방역대책본부-10138호('23.8.30.), 10260호('23.9.1.)

2.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제14-1판)」 내 사례 정의 관련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,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종료 기한 : 2024.4.1. 0시부터 종료 (보험급여과-6265호('23.12.22.) 참고)

< 주요 변경사항 >

구분	기존	변경
급여대상	○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, 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수급권자로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* *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제14판)」내 ‘코로나19를 위한 진단검사 기준’이 변경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도 포함	○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, 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수급권자로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의 사례 정의에 부합하는 자*(이하 사례 해당자) *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제14-1판)」내 ‘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’으로 환자, 추정환자, 병원체보유자(PCR,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검사결과 양성)
적용기간	○ '23. 8. 31. 진료분부터 적용	○ '24. 1. 1. 진료분부터 적용

붙임 :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(변경) 1부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관인생략

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제주특별자치도지사, 세종특별자치시장, 서울특별시시장, 부산광역시시장, 대구광역시시장, 인천광역시시장, 광주광역시시장, 대전광역시시장, 울산광역시시장, 경기도지사, 충청북도지사, 충청남도지사, 전라북도지사, 전라남도지사, 경상남도지사, 경상북도지사, 강원특별자치도지사

주무관

오소정

행정사무관

박소영

보험급여과장

전결 01/03

정성훈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33 2024.01.03. 접수 2024.01.03.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4층 / osjung98@korea.kr
전화 044-202-2736 전송 044-202-3934 / osjung98@korea.kr / 공개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